

어촌지도자들의 수산정책 이해 제고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 교육



인 천 광 역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목 차

1. 회의개요	5
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주요사업 및 홍보사항 ..	11
Ⅰ. 수산기술지원센터 주요사업 안내	12
Ⅱ.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안내	37
Ⅲ. 수산물 안전성 조사 사업안내	43
3. 인천광역시 수산과 주요사업 및 홍보사항	51
4.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사업 및 홍보사항	71

1. 회 의 개 요

어촌지도자들의 수산정책 이해 제고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 교육

- ❖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 를 실시하여 수산 정책 이해 제고 및 어촌발전 방안 모색

I. 개 요

- 목 적 :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수산정책 및 시책 등을 교육·홍보 하여 지역 어업인 역량 강화
- 일 시 : 2022. 5. 18.(수) 09:20 ~ 12:00
- 장 소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2층 회의실
*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
- 대 상 : 어촌지도자 협의회 구성원 90명

소 계	협의회 회장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어촌계장 (59명)			어업인단체장	유관기관 (市, 군·구, 수협장)
		구	강화군	옹진군		
90명	1	18	14	27	14 (겸임2)	16

- 교육내용
 - 2022년 수산정책 및 수산사업 설명 등
 - 어촌지도자 건의사항 청취 등
- 근 거 : 어촌지도자 교육 지침(해양수산부)

II. 교육 세부계획

□ 진행일정 : 2022. 5. 18.(수), 09:20 ~ 12:00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고(주관)
사전등록	9:20 ~ 9:50	30'	· 참가자 등록	-
시정 설명회	9:50 ~ 9:55	5'	· 인사 말씀	·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 市 수산과장 · 市 수산자원연구소장 · 어촌지도사
	9:55 ~ 10:10	15'	· '22년 수산기술지원센터 주요사업 설명 - 주요사업 변경사항 안내 -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안내	
	10:10 ~ 10:30	20'	· '22년 수산과 주요사업 및 홍보사항 설명	
	10:30 ~ 10:45	15'	· '22년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사업 설명	
	10:45 ~ 10:55	10'	· 수산물 안전성 조사 사업 안내	
	10:55 ~ 11:10	15'	· 어촌지도자 건의사항 청취	
	11:10 ~ 12:00	50'	· 정보 교류의 시간	

* 각 기관 및 군·구 여건에 따라 발표시간 및 발표자 변동 가능

III. 협조사항

○ 어촌계장·어업인단체장

- 임무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 5. 31.(화)까지 등기우편·팩스(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제출시 활동비 등 지급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 수산기술지원센터 김혜정
- 팩 스 : 032-440-8874
- 이 메 일 : shycall@korea.kr

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주요사업 및 홍보사항

< 세 부 목 차 >

1. 수산기술지원센터 주요사업 및 홍보사항 안내 11
2.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안내 37
3. 수산물 안전성 조사 사업 안내 43

1. 수산기술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및 홍보사항

1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 보급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7)

- 관내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수시 어장예찰 실시 및 현장 기술 교육·지도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량 : 양식어장 승선예찰 12회(8개 품종)
 - 품종 : 김, 미역, 다시마, 굴, 백합, 바지락, 가무락, 새우
- 사업비 : 10,840천원(시비 100%)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각 군·구
 - * 주요 예찰지역 : 강화군 전역, 옹진군 북도면(장봉도), 옹진군 영흥면 등
- 예찰면적 : 638건, 7,559.59ha
- 사업내용 : 양식어장 작황 파악 및 어장관리요령 지도, 유관기관 승선예찰 결과 통보 및 기술보급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3조(업무) 제2호(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지도)

□ 추진일정

- 2022. 2월 :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보급(2회)
- 2022. 6월~7월 :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보급(비예산, 4회)
- 2022. 8월~9월 :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보급(4회)
- 2022. 10월 : 어장예찰 재료구입(구명조끼 등)
- 2022. 10월~12월 :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보급(6회)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어촌계별 어장예찰 시 입회 협조
-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통보 협조

2 통합 시험양식 사업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3)

- 양식품종 다양화 및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양식을 추진하여 양식 가능성, 경제성, 산업적 가치검증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비 : 23,980천원(시비 100%)
- 사업량 : 1개소
- 사업지역 : 옹진군 대청면 독바위 지선(복합양식 제58호 어장)
- 양식장 면적 5ha 중 1.25ha(100m, 5줄)
- 사업내용 : 통합 시험양식
-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참고사진〉



통합 양식 모습



통합 양식 모습

□ 추진일정

- 2022. 1월 : 세부계획 수립 및 어장 임차 계약
- 2022. 3 ~ 6월 : 통합 인공치패 양식줄 및 채묘연 제작·설치
- 2022. 1 ~ 12월 : 해황 및 유생조사, 자연산 통합 성숙도 조사
- 2022.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신규 시험양식을 희망하는 품종이 있을 경우 해당 군·구 및 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4)

- 어촌지도자에게 정책 설명을 통해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 수산업발전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으로 수산정책 반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량 : 2회
- 사업비 : 27,2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운영대상 : 어촌지도자 협의회 구성원 90명 (단위 : 명)

소 계	협의회 회장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어촌계장 (59명)			어업인단체장	유관기관 (시, 군·구, 수협장)
		구	강화군	옹진군		
90명	1	18	14	27	14 (겸임2)	16

- 교육내용
 - 2022년도 주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및 인천광역시 수산시책 교육
 - 어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로 어촌발전 추진방향 및 문제점 인식
 - 상호 정보교환 기회마련 및 어촌활성화 방안 모색
- 추진근거 :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시행지침(해양수산부)

□ 추진일정

- 2022. 1월 : 2022년 어촌지도자 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 2022. 5월 : 2022년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 개최
- 2022. 10월 : 2022년 하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 개최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어촌지도자 교육 실시 후 임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4 수산업경영인 교육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5)

- 수산시책 및 선진지 견학, 간담회 등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능력을 갖춘 수산전문인력 양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량 : 2회, 30명(신규 수산업경영인 교육 1회, 기존 수산업경영인 교육 1회)
- 사업비 : 10,000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수산업경영인 어업기술 교육 및 현장 교육·시찰
- 교육내용
 - 정책분야 : 해양수산시책, 수산기술지원센터 주요업무 및 수산업경영인 사업집행지침
 - 기술분야 : 양식 및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선박건조업체, 수산물 위판장 등 현장 학습을 통한 신기술 습득 및 정보교류
- 추진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추진일정

- 2022. 1월 : 2022년 수산업경영인 교육 계획 수립
- 2022. 5월 : 신규 수산업경영인 교육 실시(1회, 15명)
- 2022. 10월 : 기존 수산업경영인 교육 실시(1회, 15명)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수산업경영인 교육을 수료하면 교육시간(20시간)을 인정해 드리오니, 향후 수산업경영인에 지원하실 어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 시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5)

- 수산업경영인의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위상 제고 및 전문어업경영인 자질 함양을 위한 수산경제 신문 지원 및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비 : 26,8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제12회 인천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수산업경영인 전문지 구독지원(관내 수산업경영인 200명)
- 사업자 :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인천시 연합회
-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추진일정

- 2022. 1월 : 수산전문지 구독 지원 계획 및 제12회 인천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계획 수립
- 2022. 4월 ~ 12월 : 수산전문지 구독료 지원(매분기)
- 2022. 10월 : 제12회 인천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 2022. 12월 : 사업비 정산

6

어업인 전문기술교육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4)

- 지역별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품종을 선정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교육계획 : 7회, 140명
- 예산액 : 3,422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어촌지역별 주 전략품종을 선정하여 현지교육 실시
(굴, 백합, 김, 전복, 새우, 다시마, 뱀장어, 등)
- 추진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추진일정

- 2022. 1 ~ 2월 : 어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계획 수립
- 2022. 3 ~ 12월 :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실시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내년 초 어업인 전문기술교육수요조사 시 교육을 희망하는 어촌계에서는 희망품종 및 교육시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현장교육 실시

7 창업어가 멘토링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6)

- 신규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 지도를 통해 창업어가의 안정적 어촌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비 : 12,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량 : 창업어가(2) 및 후견인(2)
- 사업내용 : 신규어가에 양식 기술정보 제공하는 후견인에게 보조금 지급

□ 추진일정

- 2022. 1월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2022. 2월 : 신청 공고 및 창업어가·후견인 선정
- 2022. 3~12월 : 창업어가 추진사항 점검 및 보조금 지급(10회)
* 창업어가 후견인에게 소요비용 지원 600천원/월

□ 참고사항

- 창업어가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인 자, 귀어 후 3년 이내인자,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자
- 후견인 :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우수경영인 등
- 후견활동 : 월 최소 6회(1회 2시간이상) 후견활동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창업어가를 방문하여 실시

8

청년 어촌 정착지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3)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비 : 21,600천원(국비 14,640, 시비 6,960)
- 사업량 : 2명(강화군 1, 옹진군 1)
- 사업대상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 사업내용 : 창업 관련 교육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어업 기자재 구입 등 어업분야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추진일정

- 2021.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해양수산부)
- 2022. 1월 : 사업 계획수립 및 군·구 보조금 교부
- 2022. 1 ~ 12월 : 청년 어촌 정착지원 보조금 지급 및 사업관리
- 2022.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어업인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2)

- 도서·벽지 취약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 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량 : 어선 450척(20회)
- 사업비 : 9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지역 : 3개 권역(백령·대청, 연평·자월, 서구·강화)
- 사업내용 :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어선, 어업용장비, 양식장비 등) 무상 이동 점검 및 수리
※ 무상 부품 교체비용 : 1인당 1회 10만원, 연 2회
- 추진근거 : 수산장비 임대활용사업 시행지침(해양수산부)

□ 추진일정

- 2022. 1월 : 수요 조사(군·구) 및 추진계획 수립
- 2022. 2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2월 : 설명회·평가회 개최
- 2022. 3월 : 수리업체 선정 및 약정 체결
- 2022. 3월 ~ 12월 : 이동수리소 운영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지원대상이 어업경영체 등록어업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은 제외)이므로 사전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어업인에게 지도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리소 운영은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및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가 목적으로 부품이 아닌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4)

-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량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교육 8회, 160명
- 사업대상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43개소, 3,820명
- 사업내용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발굴 및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미참여 어업인과 활동실적이 저조한 공동체를 대상 교육
- 추진근거 :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지원 사업 시행지침(해양수산부)

□ 추진일정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 2022. 1~ 2월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 2022. 3~12월 : 교육 실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 2022. 5월 : 자율관리어업 시·도 지역협의회 본평가
- 2022. 8월 :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 본평가 및 순위결정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반기별(상·하반기) 자율관리 어업평가지 활동일지 기간내 제출
* 상반기 : 8월까지/ 하반기 : 차년도 2월까지 제출
- 법률 및 규정 개정(붙임 참고)으로 육성사업비 지원 기회가 많아졌으니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 자율관리어업 일지작성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자 (032-458-74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8.제정, 2021. 2.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제정된 사항을 훈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공동체 구성 요건, 선정 취소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 도모

□ 주요내용

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변경(제5조)

- 내수면어업공동체 : 5명 이상 → 10명 이상
- 마을·어선·양식업공동체 : 20명 이상
- 복합어업공동체 : 규정 별표1 참조

나.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 기준 변경(제8조)

- 1등급(선진공동체) : 자립공동체 중 전체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결과 3회 이상 상위 5%이내에 포함된 공동체
- 2등급(자립공동체) :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5회 또는 6억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
- 3등급(모범공동체) :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3회 또는 3억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
- 4등급(협동공동체) : 참여 및 모범 이상 등급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공동체
- 5등급(참여공동체) : 참여기간이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공동체

다. 사업내용 조정 및 구체화(제25조)

라. 지역협의회(제26조)

- 지역협의회를 시·도와 군·구에 각각 두어 자문역할 수행

11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산물안전관리팀 ☎458-7455)

-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유해성분이 잔류된 수산물의 시중유통 사전차단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매년)
- 사업량 : 수산물 안전성 조사 200건
- 조사대상 : 관내 연근해 어획물(위·공판장) 및 양식수산물(양식장)
- 조사품종 : 시기별 주요 어획·생산 수산물
- 추진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 조사항목

물 질 별 (5 0)	조 사 항 목
중 금 속 (3)	총수은, 납, 카드뮴
방 사 능 (2)	요오드(¹³¹ I), 세슘(¹³⁴ Cs+ ¹³⁷ Cs)
동물용의약품 (38)	마크로라이드계 3, 벤조이니다졸계 5, 설파계 15, 세팔로스포린계 1, 퀴놀론계 5, 테트라사이클린계 3, 페니실린계 3, 이소유계놀, 기타 2
금 지 물 질 (3)	노르플록사신, 오픈록사신, 페플록사신
유 기 물 질 (2)	폴리염화비페닐(PCBs 7), 멜라민
식 중 독 균 (1)	비브리오 패혈증(vibrio vulnificus)
기 타 물 질 (1)	에톡시퀸

* 센터 여건에 따라 조사항목은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구 분	계획(200건)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	18	20	20	21	21	21	21	20	20	10	8
생산단계 (양식장)	64	6	6	6	7	7	7	7	6	6	4	2
거래 전 단계 (위·공판장)	136	12	14	14	14	14	14	14	14	14	6	6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이슈 등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료수거(채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인근 양식어업인들에게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대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강화되는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이것을 꼭 지켜주세요!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 전문가의 진단 및 처방 후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해 주세요!
• 용법·용량 및 대상어종 변경 시 처방전과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 받으세요.
- 동물용의약품의 용법·용량과 휴약기간을 지켜주세요!
- 동물용의약품 사용내역을 꼭 기록하고 관리해 주세요!
- 사용하고 남은 동물용의약품은 약품에 표시된 저장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수산물 출하 시

- 동물 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 이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주세요!
- 출하 전에는 동물 약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료와 기구를 관리해 주세요!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22년부터 강화됩니다!

< 주요 내용 >

- ▶ 2022년 1월부터 '수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항균제 일률기준 적용(0.01mg/kg)
- ▶ 2024년 1월부터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은 왜 강화되나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강화되나요?

① ('22년 1월 1일부터) 수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항균제 일률기준 적용

수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균제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행 0.03mg/kg 이하 적합	일률기준(0.01mg/kg)이란?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검출되지 않는 수준의 아주 적은 양을 의미합니다.
개정 0.01mg/kg 이하 적합	

② ('24년 1월 1일부터) 수산물(어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어류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어류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행	개정
'어류'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 ① CODEX 기준 ② 유사축종 기준 ③ 항균제 0.03mg/kg 적용	'어류'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 일률기준(0.01mg/kg) 적용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란 어떤 제도인가요?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안전성이 증명되어 기준이 설정된 물질(약품, 농약 등) 외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 ppm)을 적용하여 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evel)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농약 PLS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9년~)

해양수산부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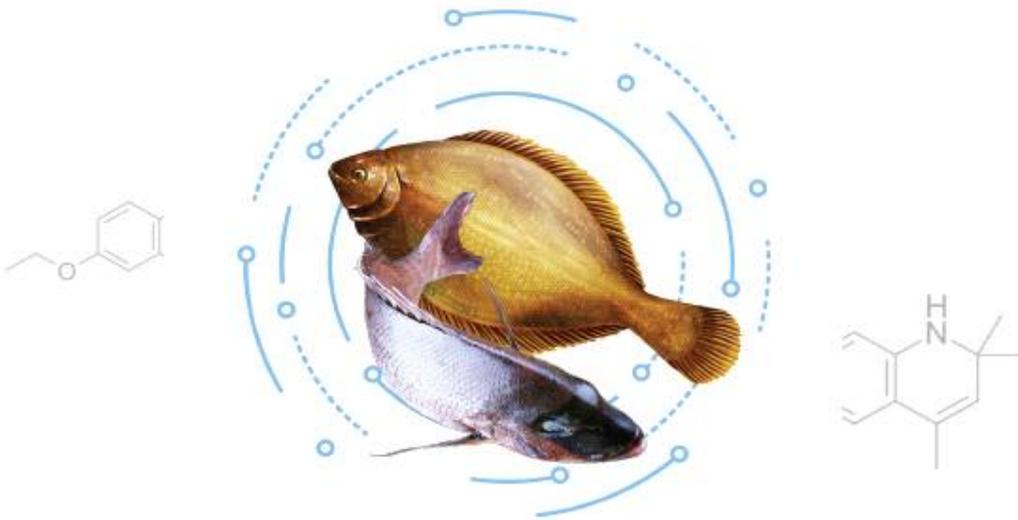
수산물 의약품 정비·확충	수산물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재검토하고 어업현장에서 필요한 수산물 의약품을 확충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홍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 관계법령 정비·보완	처방대상 수산물 의약품 대상을 정비하고 전자처방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항균제를 사용하고, 전문가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항균제를 사용할 때는 출하제한 기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 출처 : 해양수산부



**어류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유예('21.7~'22.6) 종료 후
'22.7월부터 어류에서 기준치(1.0mg/kg) 이상 검출될 경우'
'출하연기'조치대상이 됩니다.**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유예 및 관련규정 개정

<p>에톡시퀸 기준</p> <p>어류 1.0mg/kg이하, 갑각류 0.2mg/kg이하</p>	<p>유예기간(어류만 해당)</p> <p>2021.7.1~ 2022.6.30.까지</p>	<p>잔류허용기준 유예 대상품목</p> <p>어 류 (갑각류는 잔류허용기준 적용 중)</p>
--	--	--

사료등의기준 및 규격 개정 사항 ('21.6.24 시행, 별표22 첨가,혼합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

<p>개정 전</p> <p>수산동물용 300g이내/배합사료1톤</p>	<p>개정 후</p> <p>수산동물용 300g이내/배합사료1톤 ※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는 에톡시퀸 혼입금지, 다만, 함량이 0.002% 미만이면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봄</p>
---	---

* 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2 수산생물 방역 사업(질병예찰 및 방역, 교육)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물안전관리팀 ☎458-7457)

- 수산생물 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교육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량 : 수산생물 양식·집합시설 현장 질병예찰 100개소 이상
- 사업대상 : 수산생물 양식·집합시설(양식장 등 477개소)
- 사업내용 :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찰
수산생물 전염병 어업인 방역 위탁교육(2회)
방역 물품 구입·지원(자동분무소독기 등)
- 추진근거 :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시행 지침(해양수산부)

□ 추진일정

- 2022. 1월 : 방역사업비지원 사업 및 교육 세부계획 수립
- 2022. 2~12월 : 수산생물 질병 예찰(수시)
- 2022. 3~12월 : 방역물품 구입·지원(자동분무소독기 등)
- 2022. 4~10월 :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 2022. 5~11월 :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교육(2회)
- 2022. 12월 : 사업 정산 및 보고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수산생물 질병 발생시 신속 신고 및 양식장 질병예찰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유해생물(기생충) 구제 사업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물안전관리팀 ☎458-7457)

- 양식 품종에 맞는 유해생물 구제약품을 적기에 지원·배부하여 양식생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식장 운영·관리를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량 : 수산생물 양식장 기생충 예찰 100개소 이상
- 사업비 : 10,000천원(국비 100%)
- 사업대상 : 수산생물 양식장 등(477개소)
- 사업내용 : 기생충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정기예찰 및 기생충 확산방지를 위한 구제약품 지원
- 추진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시행 지침(해양수산부)

□ 추진일정

- 2022. 1월 :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2. 2 ~ 12월 :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현장 예찰(수시)
- 2022. 3월 :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약품 수요조사
- 2022. 3 ~ 11월 :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지원
- 2022. 12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양식장 기생충 발생 시 신속신고 및 금지품목 약제 사용금지 협조

14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수산물기술지원센터 수산물기술보급팀 ☎458-7465)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배포
- 소비자에게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량 : 원산지 단속, 표시판 제작, 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 사업비 : 13,850천원(시비100%)
- 대상업소 :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 사업내용 :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연중), 수산물원산지 표시판 제작·배포, 수산물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5만원/일)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수산물 명예감시원 현황 : 총53명

□ 추진일정

- 2022. 1월 :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계획 제출 및 소요액 조사
- 2022. 3월 :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배포
- 2022. 1 ~ 12월 : 월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및 분기별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수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들의 운영업소 또는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 현장에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어업도우미 지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6)

- 사고·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 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비 : 6,000천원(국비 50%, 시비 30%, 자담 20%)
- 사업량 : 용진군 2명, 30일
- 사업내용 : 어업을 대행한 어업도우미 비용 지원
-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26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추진일정

- 2022. 1월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2022. 2월 : 군·구 보조금 교부
- 2022. 3 ~ 12월 : 어업도우미 운영 지원
- 2022. 12월 : 사업 정산 및 보고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1일 100,000원(자담 20,000원 포함), 30일간 어업을 대신한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6 수산 종자 생산 확인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7)

- 수산종자관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종자생산 어가에 대한 기술보급·확인 및 입회로 우량종자 방류사업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 12월(연중)
- 대 상 : 종자생산업 허가 20개소(강화군 11, 용진군 9)
 - ※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 관리 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
- 내 용 : 종자생산 1~3차 확인(품종별 상이) 및 확인서 발급, 사업 낙찰 대상 업체 사전현지 확인, 검수 및 방류 입회
- 추진근거 : 수산종자 방류 세부지침(인천광역시)
- 어종별 생산 확인 기간 및 횟수

구 분	1차 확인	2차 확인
일반어종	부화 이후 20일 이내	부화 이후 30~60일 이내(확인서 발급)
갑각류(꽃게)	친어확보 후 부화이후 7일 전후 (확인서 발급)	필요시 2차 확인 가능
해 삼	부화 이후 30일 이내	채묘 이후 60일 이내
	3차 확인 : 채묘 이후 100~130일 사이(확인서 발급)	
전 복	부화 이후 30~40일경	부화 이후 100~150일 사이
	3차 확인 : 2년산 전복치패(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확인서 발급)	
개 조 개	부화 이후 60일경	부화 이후 90일경(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 기준 : 최종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발급

□ 추진일정

- 2022. 1 ~ 12월 : 종자생산 확인(상시) 및 검수·방류 입회
 - 생산량 확인, 납품(방류) 확인서 발급 실적관리, 유관기관 협의 등

17 수산재해(적조, 해파리) 대책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7)

- 수산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어업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10월(7개월)
- 사업지역 : 4개소(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구분	구·군	예찰지역	비고
1	중구	덕교동 지선	-
2	서구	세어도 지선	-
3	강화군	내가면 지선	-
4	옹진군	영흥도 지선	-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총괄

- 추진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 사업내용 : 수산재해(적조, 해파리) 방지대책 수립 및 대책반 운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어업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 육상예찰(정기)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총괄) : 양식어장 및 수산생물질병 방역예찰과 병행하여 적조 동태파악 및 감시체계 운영
 - 구·군(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정기 육상예찰을 통해 적조발생 동태를 파악하고, 수산기술지원센터에 매달 5일까지 보고
- 적조 명예감시원을 통한 예찰
 - 적조발생이 우려되는 해역의 어촌계 또는 마을 단위로 적조 명예감시원 위촉(4명)을 통해 적조 조기발견 및 감시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수산재해 발생 시 해당 군·구에 신속한 신고 당부드립니다.

18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복무 관리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5)

- 어촌 정착의욕이 높은 사람이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어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어업인의 병역특례제도 운영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신청 당해연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익년도 선정 예정자 포함) 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 대상제외 :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자(편입 희망 연도 졸업(예정)자, 야간학교 및 방통대 수학자는 신청 가능)
- 복무기간 : 34개월(소집대상 보충역에서 편입된 자 : 26개월)
- 사업내용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복무 관리
- 추진근거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지침(해양수산부) 병역법 제36조,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3조~21조

□ 추진일정

- 2022. 6월 : 신규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2. 7월 : 신청자 평가 후 추천적격자 해양수산부에 통보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역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어촌정착의욕이 높은 어업인후계자를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군 대체복무 제도로 주변에 관심 있는 어업인후계자 및 어업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수산업경영인 발굴·육성(용자)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5)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 발굴지도와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전문 인력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한도 : 용자100%
 - 어업인후계자 : 300백만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 200백만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대상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상자
- 사업내용 :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소금업, 유통업, 기타 수산기반 시설 구입(운영) 용자금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추진일정

- 2022. 1~2월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홍보·신청·접수
- 2022. 3월 : 수산업경영인 선정 전문심사위원회 개최
- 2022. 4월 : 수산업경영인 선정 완료
- 2022. 7월 :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 실시(1차)
- 2022. 12월 :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 실시(2차)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수산업경영인 용자 지원사업은 저금리 금융기관 용자지원을 통해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심있는 어업인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용자)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6)

-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지원한도 : 용자100%
 - 창업자금 : 세대당 3백만원 한도
 - 주택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 * 연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업대상 : 귀어 창업자금 지원 선정자
- 사업내용
 - 창업자금
 - 수산분야 :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생산업
 - 어촌비즈니스분야 : 어촌관광, 해양수산물레저
 - 주택자금 : 어가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
-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추진일정

- 2022. 1월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접수(군·구)
- 2022.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2022. 3~12월 : 사업추진 실적 확인(군·구) 및 자금대출(수협)

2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용자)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보급팀 ☎458-7466)

-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하여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지원한도 : 어가당 최대 2억원(용자100%)
※ 연 1% (패류 : 2년 분할상환, 어류 등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사업대상 : 배합사료 구매자금 선정자
- 사업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용자)
- 추진근거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해양수산부)

□ 추진일정

- 2022. 1월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2. 2월 : 사업비 배정 요청 및 사업자 선정
- 2022. 3 ~ 9월 : 2022년도 사업자 대출 실행
- 2022. 3 ~12월 : 배합사료 구매자금 추진실적 점검 및 분기별 보고

□ 참고사항

-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사용하시는 어가에서는 배합사료 급이 대장을 꼭 작성하여 주시고 세금계산서 누락 없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22 2023년 수산과 - 수산기술지원센터 업무 조정(안)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양식장 지원사업 등을 '수산기술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 ※ 양식장 기술·지도 보급 및 지원·관리 업무는 수산기술지원센터 추진

□ 업무조정(안)

협의대상	조정이관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① 수산기술지원센터 추진
②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② 수산기술지원센터 추진 ※ '22년 해수부 수요조사 후 추진
③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	③ 수산기술지원센터 추진
④ 양식장 바닥재 지원	④ 수산기술지원센터 추진
⑤ 김 양식 기자재 지원	⑤ 수산기술지원센터 추진

☞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관리·지도업무(공동체 확산교육 활동실적 평가·입력, 우수공동체 선정,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와 양식장 내 질병예방 및 기술보급·지원사업 등 기(既)추진하고 있어 업무 일원화

□ 향후계획

- (2022년) 수산과와 수산기술지원센터 업무 공조
 - 보조금교부, 추진점검, 정산 등
- (2023년 예산편성부터)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추진

II.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1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 귀어·귀촌인에 필요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상담, 박람회,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귀어·귀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해양수산부 직접사업)
- 지원규모 : 17억 /1개소(국비100%)
- 사업대상 : 위탁시행자(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내용
 -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
 -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 귀어·귀촌 실태조사 등

2 도시민 어촌유치지원(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비)

-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4억 /1개소, 연(국비50%, 지방비50%)
- 사업대상 : 시·도(광역시 제외)
 - * 현재 경기도, 충남,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제주 운영중
- 사업내용
 - (추진기구 운영비) 귀어·귀촌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
 - (하드웨어 구축비) 귀어·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리모델링비 등

※ 인천광역시 : 사업대상 지침 변경 후 신청 예정

3 귀어학교 개설

- 귀어희망자, 귀어인 등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 및 양식업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 지원규모 : 10억 /1개소(국비50%, 지방비50%)
- 사업대상 : 시·도
- 사업내용
 - 교육시설, 기숙사 등 신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비, 건축비 지원
 - 교육용 시설 및 장비 지원

※ 인천광역시 : 2022년 4월 공모 신청

4 도시민 기술교육(귀어학교 운영비)

-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해당 귀어학교(국비70%, 지방비30%)
- 사업대상 : 시·도
- 사업내용
 - 귀어학교 운영비 지원

※ 인천광역시 : 공모 신청 예정

5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을 조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50백만원/1개소(국비50%, 지방비50%)
- 사업대상 : 시·도 또는 시·군·구
- 사업내용
 - (주택 리모델링) 7년이상 무상제공 및 임대차 계약
 - (이동식 주택) 사업장소 제공자가 소유한 대지를 7년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식 주택 설치
 - (임대운영) 2년이상 임대차 계약, 30만원범위 내 지원

※ 희망자 신청(2023년 사업)

6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어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 진행중
- 지원규모 :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융자100%)
- 사업대상 : 귀어업인 또는 재촌 비어업인
- 사업내용
 - (창업) 수산분야 및 어촌 비즈니스분야 창업자금
 - (주택구입)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 인천광역시 : 사업 진행중

7 창업어가 멘토링

- 신규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어촌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 진행중
- 지원규모 : 창업어가 1인당 월60만원(국비50%, 시비50%)
- 사업대상
 - (창업어가)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 어업인 등
 - (후견인) 수산 신지식인, 수산직 퇴직공무원 등
- 사업내용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 기술, 경영 등에 대한 지도

※ 인천광역시 : 사업 진행중

8 청년어촌 정착지원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 진행중
- 지원규모 : 1년차(100만원/월), 2년차(90만원/월), 3년차(80만원/월)
-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
- 사업내용 :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이용

※ 인천광역시 : 사업 진행중

Ⅲ. 수산물 안전성 조사 사업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방사능 등 유해장류물질 포함 수산물 시중유통 차단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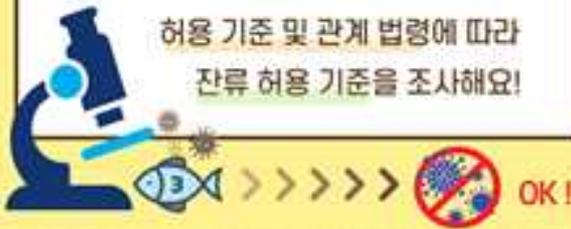
- 01 수산물 안전성 조사란?
- 02 수산물 안전성 조사대상
- 03 수산물 안전성 조사항목
- 04 수산물 안전성 조사절차
- 05 부적합 수산물의 조치
- 06 정밀 분석장비 보유현황
- 07 연도별 조사실적

01. 수산물 안전성 조사란?

궁금어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가 뭐예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산물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을
허용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잔류 허용 기준을 조사해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 안전성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02. 수산물 안전성 조사대상

궁금어 02

어떤 수산물이 조사 대상인가요?

생산단계 저장단계 출하 전 단계



생산단계

•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수산물
예) 연·내수면 양식장

저장단계

•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냉장어업 등)

거래(출하) 전 단계

•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유통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에 있는 수산물(연근·해이·학물)

02. 수산물 안전성 조사대상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

연근해 어획물 / 양식수산물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추진
(생산, 저장, 거래 전 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추진
(유통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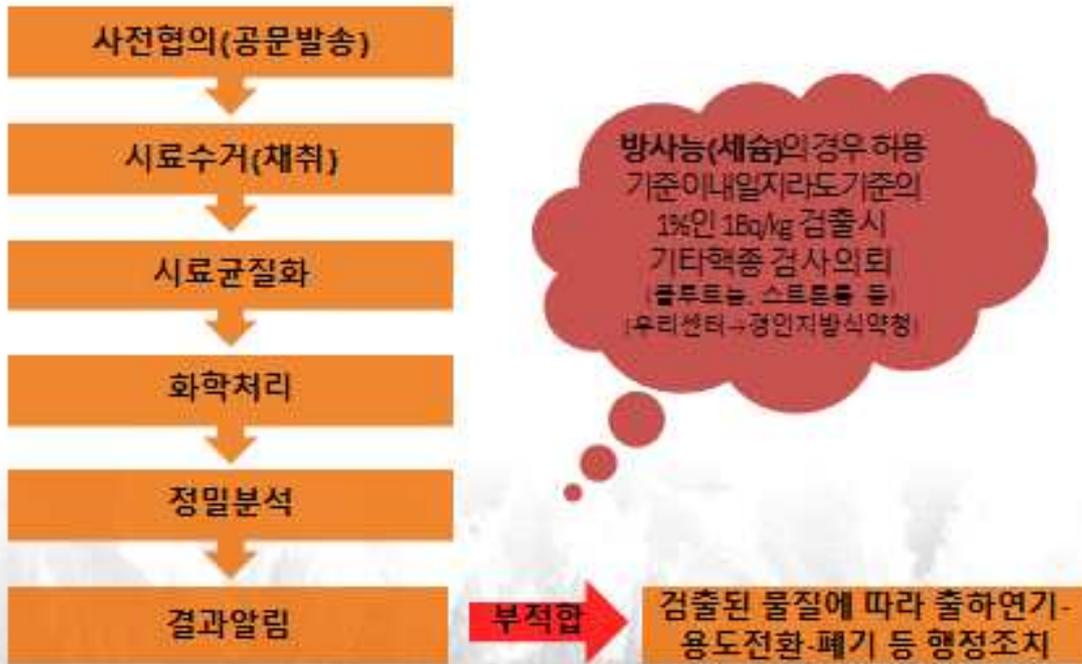
03. 수산물 안전성 조사항목(現 53종)

궁금03

어떤 항목을 검사하나요?

-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 방사능(요오드, 세슘)
- 동물용의약품(OTC 등 42종)
- 금지물질(오플록사신 등 3종)
- 유기물질(PCBs, 멜라민)
- 미생물(비브리오 패혈증)

04. 수산물 안전성 조사절차



05. 부적합 수산물의 조치

궁금05

부적합품 발생시, 어떻게 조치하나요?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을 넘은 경우

- 생산·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기준초과 사실을 통지

↓

-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 명령과 사용 금지, 수산물의 출하 연기·용도 전환, 폐기 명령과 처리방법을 지정

출하연기 :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전환 : 유해물질의 분해소실 기간이 길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공업용 원료 및 수산물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 : 출하연기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 =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추가 연장가능

06.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장비 현황(개요)

개요

- 일 시 : 2018. ~ 2020.
- 사업비 : 20억 (국비 10, 시비 10)
- 담당자 : 3명 (어촌지도사 윤재호, 이희진, 최병국)
- 내 용 :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장비 **47종, 115대 구축완료**

담당자



<윤재호 지도사>



<이희진 지도사>



<최병국 지도사>

06.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장비 현황(개요)

부안군의 상계마을인형		보도 자료		2023년 수도권매입지 종료
매도일자	2023년 3월 17일(수) 총 3매	수산물안전관리팀장 권윤환 ☎458-7453	계정인 ☎458-7453	공공포 ☎458-7453
담당 인형수상기술 부서 지양센터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권윤환 ☎458-7453	계정인 ☎458-7453	공공포 ☎458-7453
사건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원고사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사건	매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수산물안전센터 수산물 안전성 조사 본격가동
- 소비자에게 유익한 수산물 시용 품질 시진저단 -

- 민형광역시(시장 직할촌)는 수산물안전센터가 정부로부터 안전성 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수산물 출하 전 단계(양식장, 위판장 등)의 수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분석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안전센터는 최근 몇 년 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분석장비 및 실험실을 47종, 115대를 구축하고 관내 양식장과 위판장의 주요 생산 품목을 위주로 비지파 등 55종을 선정하여 125건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중금속 3종(수은, 납, 카드뮴), 항산화 3종(요오드, 색소), 항생물질(클로시페트라사이클린 등 20종), 감자물질(말라카이트그린 등 3종), 유기물질 1종, 비설탕 3종, 기타물질 3종 등 총 47항목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 특히,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논란에 따라 방사능 물질분석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 조영희 민형시 수산물안전지원센터장은 “제품 및 수온에 따라 총회 발생할 수 있는 마린독소, 패류독소, 장염 비브리오균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사진 1부.

○수산물 안전성 조사(방사능 측정용) 관련 참고사진



06. 정밀 분석장비 보유현황



- 장비명 : ICP-MS
- 운용장소 : 분석실-1
- 보유대수 : 1대
- 분석항목 : 중금속



- 장비명 : LC-MS/MS
- 운용장소 : 분석실-2
- 보유대수 : 1대
- 분석항목 : 항생-금지-유기물질



- 장비명 : 방사선분광분석기
- 운용장소 : 분석실-1
- 보유대수 : 1대
- 분석항목 : 방사능



- 장비명 : GC-MS
- 운용장소 : 분석실-2
- 보유대수 : 1대
- 분석항목 : 유기·기타물질·농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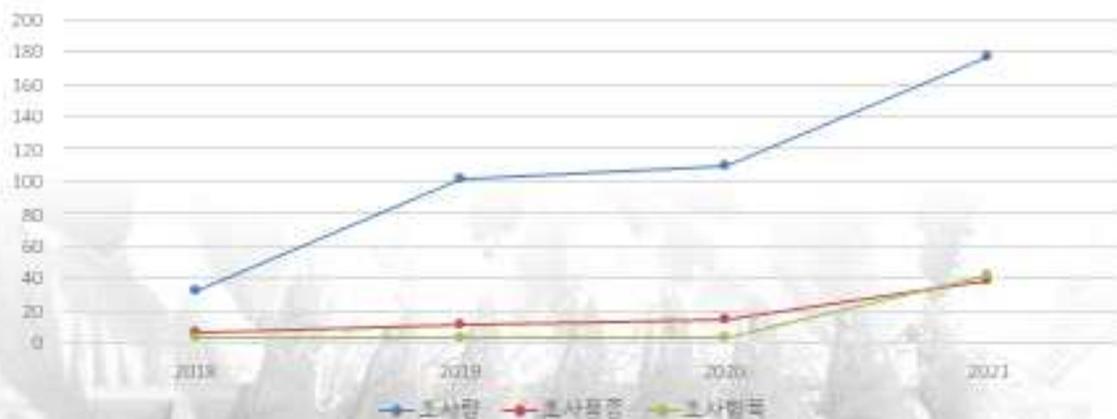
- 장비명 : RealTime PCR
- 운용장소 : 분석실-4
- 보유대수 : 1대
- 분석항목 : 미생물



- 장비명 : 미생물자동증정기
- 운용장소 : 분석실-4
- 보유대수 : 1대
- 분석항목 : 미생물

07. 연도별 조사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조사량	32건	101건	110건	177건	
조사품종	7종	11종	15종	39종	
조사항목	중금속 3종	중금속 3종	중금속 3종	방사능, 항생물질, 중금속, 금지물질 등 42종	
적합률	100%	100%	100%	100%	



08. 계절별 제철 수산물

구분	품종
봄 (3~6월)	가자미, 도다리, 참다랑어, 병어, 멸치, 농어, 송어, 임연수 주꾸미, 갑오징어, 바지락, 동죽, 키조개, 소라, 다슬기, 미더덕, 멍게 꽃게 다시마
여름 (6~9월)	참돔, 장어, 미꾸라미, 갈치, 민어, 메기 전복, 문어 성게
가을 (9~11월)	넙치(광어), 고등어, 삼치, 꽁치, 전어 꽃게, 새우(대하, 흰다리새우), 낙지 해삼
겨울 (11~3월)	조피볼락(우럭), 명태, 대구, 아귀, 도미, 과메기, 삼치, 방어, 송어 대게, 꼬막, 굴, 홍합(담치), 새조개, 가리비, 피조개 김, 매생이

감사
합니다!

3. 인천광역시 수산과 주요사업 및 홍보사항

< 세 부 목 차 >

1. 어촌뉴딜 300사업	54
2. 수산직불제 안내	55
3.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안내	59
4. 어항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61
5.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63
6. 「어장관리법」 개정(안) 알림	67
7.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68
8. 보조사업(예산) 신청절차 안내	69

1 어촌뉴딜 300사업

● 낙후된 어촌의 항·포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실현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4년 (6년, 대상항별 3년)
- 대 상 : 16개소(중구 3, 서구 1, 강화군 5, 옹진군 7)
- 사 업 비 : 162,528백만원(중구 28,597, 서구 9,568, 강화군 47,359, 옹진군 77,004)
 - ▶ '19년 선정 : 5개소(중구 1, 강화 1, 옹진 3) / 45,589백만원
 - ▶ '20년 선정 : 5개소(서구 1, 강화 2, 옹진 2) / 47,903백만원
 - ▶ '21년 선정 : 3개소(중구 1, 강화 1, 옹진 1) / 30,137백만원
 - ▶ '22년 선정 : 3개소(중구 1, 강화 1, 옹진 1) / 38,899백만원
- ※ 여객선 기항지 개선 사업 7개소(강화 2, 옹진 5)
- 사업내용 : 어업기반 시설, 지역특화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

□ 추진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현재)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9년 선정 (5개소)	투자심사·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실시설계 추진		인허가 협의 및 착공		공사 추진 및 완료							
'20년 선정 (5개소)			투자심사·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실시설계 추진		인허가 협의 및 착공		공사 추진 및 완료					
'21년 선정 (3개소)					투자심사·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실시설계 추진		인허가 협의 및 착공		공사 추진 및 완료			
'22년 선정 (3개소)							투자심사·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실시설계 추진		인허가 협의 및 착공		공사 추진 및 완료	

□ 기대효과

- 어항 기반시설 보강 및 지역 특화 사업으로 어업인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 관련사진



2 수산직불제 안내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조건불리지역(해양수산부 선정)에 거주하는 어업인
- 사업내용 : 어가당 직불금 800천원 지원
 - 어업인 지원(80%) 640천원 + 공동기금 적립(20%) 160천원
- 신청자격 :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의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기본 지급조건

- (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2호에 따라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사람

□ 관련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2021년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중복수급자 중 미납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경영이양직불제

-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 어업인
- 지원단가 :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의 60%(최소 120만원 최대 1,440만원까지)
- 지급액 : 지원단가 × 지급기간(연)
 - 선정연령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지급

□ 관련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10년 이상 어촌계원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
- 신청기간 : 연중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어촌계 명부 사본, 신청연도 직전 3년간 어촌계 총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관내 어촌계원들에게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산자원보호직불제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 사업내용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2개 이상)에 대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금액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 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아래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앞 구간의 기 적용 합산 톤수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의 단가를 적용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

구간(어선 톤수)	1구간(10톤 이하)	2구간(10~20톤)	3구간(20톤 초과)
단가	75만원/톤	70만원/톤	65만원/톤

□ 관련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어업허가가 유효하고,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어업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 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할당

(선택의무) ①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②어선감척, ③해양쓰레기 수거, ④그 밖의 의무

○ 신청방법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협회, 단체, 조합 등)에서 신청
-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으로 단체 구성
 - ※ 연안 어선은 기본의무 중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에 참여할 경우 10척 이상 구성 및 신청 가능
- 연안어선 단체의 경우 연안어업허가자료만, 근해어선 단체의 경우 근해어업허가자료만 구성되어야 하며,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혼합 구성 불가
- (신청 제한) 전년도 출입항 기록 중 조업 목적의 출입항 실적이 50% 미만인 어선은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3년 2월경

○ 신청처 : 지급신청단체가 속한 군·구

※ 단체선정신청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 단체구성원의 신청서를 제출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관내 어업인들에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안내

- 어촌인구 감소·고령화와 어업중심 단일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현장 전담지원을 통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 등 어촌경제 활성화 기여

□ 현 황

- 기 관 명 :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해수부 공모·지정 : '18. 6. 1. 제2018-6호)
- 운영기간 : 2018년 ~ 현재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10호)
- 인력구성 : 센터장 외 3인 (☎032-811-9601~5)
- 성 격 : 어촌 6차 산업화* 현장밀착형 전담지원기구 ⇒ 어촌 종합컨설팅 기관
- 법적근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 어촌 6차 산업 : 수산업 및 어촌과 관련된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1차) 수산물의 가공과(2차) 유통·판매·서비스(3차) 등을 연계 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추진업무

구 분	업무 내용
창업 및 컨설팅	신규역량강화, 심화컨설팅 교육
육성 및 지원	어촌특화상품 개발지원, 어촌 특화상품 유통체계 구축,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행사, 어촌마을 리더 워크숍, 여성어업인 교육, 바다정화활동
특화사업 추진관리	특화사업 대상지 사후관리(컨설팅, 마을기업 등), 어촌마을 산·학·연 교류, 특화사업 홍보 및 광고 등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어촌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역 수산물 활용 특화상품개발 등 어촌경제구조 다변화를 통하여 어촌마을의 부가가치 높이고, 자생적 발전 위한 사업 추진 중
- 어촌특화사업에 관심 있고 도움이 필요한 어촌마을은 적극 참여 및 협조 바람

□ 관련사진

○ 어촌마을 역량강화 및 교육



어촌마을 창업 및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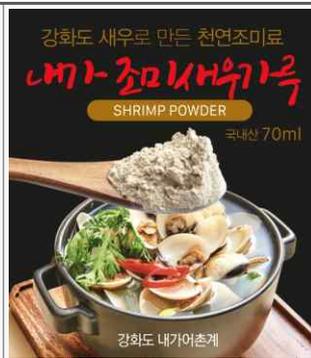


마을기업 육성 교육

○ 어촌특화상품 개발지원



중구 마시안 '해조수딩젤'



강화군 내가 '조미새우가루'



웅진군 장봉 '김·감태 세트'



웅진군 영암 '해조화장품'

4 어항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 항·포구에서 해일 또는 부주의한 사고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어항지정·관리 현황

구 분	합계	어촌·어항법 지정·관리 어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합 계	53	5	15	33
중 구	8	-	2 대무의, 광명	6 영종, 덕교, 삼목, 소무의, 예단포, 잠진
남동구	2	1 소래	-	1 남동
서 구	1	-	-	1 세어도
강화군	14	1 어유정	6 선두, 후포, 주문, 창후, 장곶, 외포	7 황산도, 선두4리, 분오리, 더리미, 건평, 서두물, 초지
옹진군	28	3 덕적, 진두, 선진포	7 두무진, 옥죽포, 답동, 소연평, 자월1리, 진리, 울도	18 신도2리, 옹암, 고봉포, 장촌, 중화동, 도우, 소야리, 문갑, 백아1리, 백아2리, 서포리, 지도, 자월2리, 승봉리, 대이작, 소이작, 뱃말, 넋출

□ 어항시설 관리·이용실태

- 인천시와 군·구에서 관리중인 어항에 안전펜스와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미비한 실정임

- 선박이 접안하는 곳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선박접안과 하역 작업을 방해하므로 시설물 설치에 제한이 따름
-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이 안전펜스 설치 시설물을 우회하여 방파제, 선착장을 이용하고 있어 해일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사고 예방대책

- 관내 어항에 안전 시설물 및 안내판 설치
- 관광객·주민들의 안전한 해안관광을 위하여 불량한 안전시설·안내표지판 보수·보강 등 재정비
- 해안·방파제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을 위해 어항시설 설치時 해안데크, 낚시광장 등 안전한 관광시설 설치 확대
- 폭풍·태풍·해일 주의보 이상 발령時 기상청·방재본부·통신사 등과 연계한 문자서비스 및 방송시설 확대 노력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어항內 안전시설물 설치 필요時 해당 군·구에 설치 요청
- 어항內 안전시설물(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안전펜스, 차량 추락 방지턱, 야간조명시설, 안내판·출입문 시설) 관리자 지정·운영(어촌계장 등)
- 기상예보 방송청취 및 기상특보時 위험경고 등 안전대피 조치

5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 봄철 산란기 도래에 따라 해역별·유형별 불법어업이 전망되어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조성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22. 5. 1. ~ 5. 31. (1개월)
- 합동단속반 : 인천광역시 수산과·특별사법경찰과, 군·구, 수협,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경
- 단속방법 : 육·해상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 중점단속 대상

- 금어기 위반
-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 이탈 불법조업
-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행위
- 어구사용 금지기간 위반
- 불법어구 제작·보관·유통 행위
- 기업형 불법조업과 조직적 불법 수산물 유통행위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 홍보 및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인천해경 등 단속기관에 신고 협조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 확립의 필요성 인식 노력

□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수산동식물		금지 기간	금지체장
어 류	문치가자미 (도다리)	12월 1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20cm 이하
	전 어	5월 1일 ~ 7월 15일까지(강원, 경북제외)	없음
	넙 치	-	35cm 이하
	농 어	-	30cm 이하
	민 어	-	33cm 이하
	조피볼락	-	23cm 이하
	쥐노래미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단, 백령, 대청 해역은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cm 이하
	참 흥 어	6월 1일 ~ 7월 15일까지	체반폭 42cm 이하
	삼 치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없음
	갈 치	7월 1일 ~ 7월 31일까지	항문장 18cm 이하 (어획량 중 20% 미만 경우 제외)
갑 각 류	꽃 게	6월 21일 ~ 8월 20일까지 (연평·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 7. 1 ~ 8. 31)	두홍갑장 6.4cm 이하
	민 꽃 게	-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
	대 하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없음
패 류	백 합	7월 1일 ~ 8월 20일까지	각장 5cm 이하
	전 복 류	9월 1일 ~ 10월 31일까지 (단, 제주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장 7cm 이하 (다만, 제주특별 자치도산은 각장 10cm 이하)
	키 조 개	7월 1일 ~ 8월 31일까지	18cm 이하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에 한함)
기 타	툫	10월 1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없음
	해 삼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없음
	낙 지	6월 21일 ~ 7월 20일까지	없음
	주 꾸 미	5월 11일 ~ 8월 31일까지	없음
	살오징어	4월 1일 ~ 5월 31일까지	외투장 15cm 이하 (어획량 중 20% 미만 경우 제외)

< 출처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

- ✓ 갈치 : 근해채낚기, 연안복합어업, 어획량의 10%미만 포획·채취 제외
- ✓ 낙지 : 인천광역시 고시 2016 - 109호
- ✓ 살오징어 : 근해채낚기,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 / 4.1~4.30.

□ 어업별 어구사용량 및 그물코 규격의 제한

어업의 종류		어구량	사용금지 그물코 규격	비 고
근해자망	20톤 미만	1만 2천미터, 3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 가능	100밀리미터 이하(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중이상의 자망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40밀리미터 이하 사용금지 ○ 멸치, 젓새우,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아니함 ※ (인천·경기) 자망에 뽀침대를 붙여 꽃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어선 선복량에 따른 어구를 사용·적재 ○ 세목망 사용금지 : 5.16.~6.15. 다만,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영광,신안)은 7.1.~7.31.까지로 하고, 전남해역에서 뽀침대 사용어구에는 세목망 금지기간 적용하지 아니함
	20톤~40톤	1만 4천미터, 4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가능		
	40톤 이상	1만 6천미터, 5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 가능		
연안자망	뽀침대 미사용	1만 2천미터, 3천미터 이내 따로 적재 가능 (인천·경기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뽀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	50밀리미터 이하(조기류)	
	뽀침대 사용	1천 5백미터		
근해안강망		15통 이내(어구용 닻 포함) 사용 및 적재	35밀리미터 이하 ※ 멸치, 반지, 뽀뎡이, 뽀장어, 곤쟁이, 까나리, 베도라치, 새우류, 꼴뚜기, 주꾸미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 제외	
연안개량안강망		5통 이내(어구용 닻 포함) 사용 및 적재	25밀리미터 이하 ※ 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망부 2중이상 어망 사용금지 ○ 조업금지 : 5.16.~6.15. 다만,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영광,신안)은 7.1~7.31.

어업의 종류		어구량	사용금지 그물코 규격	비 고
근해영양망	고정틀 폭 2미터 미만	4통	57밀리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틀에 자루그물(30미터 이하)이 직접 부착, 고정틀 밑면에 일정 간격으로 갈퀴(40밀리미터 이상)를 부착한 어구. ○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0.8미터 이하로 제작
	고정틀 폭 2~4미터 미만	2통		
	고정틀 폭 4~8미터 미만	1통		
근해통발	8톤 ~ 20톤	통발의 개수는 2,5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35밀리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을 아니함 ○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 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20톤 ~ 40톤	통발의 개수는 3,5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40톤 이상	통발의 개수는 5,0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연안통발	통발의 개수는 2,500개 (장어를 주로 포획 하려는 경우 3,200개),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22밀리미터 이하(붕장어, 낙지, 새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발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의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길이는 140밀리미터 이상 사용금지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을 아니함 ○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 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35밀리미터 이하 (그밖의 어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을 아니함 ○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 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6

「어장관리법」 개정(안) 알림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주체 변경(시·군·구→해수부) 및 어장환경 보전을 위한 어장청소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신설

□ 추진배경

- 어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의 양식업면허 심사·평가¹⁾와 어장환경평가의 시행 주체 일원화 필요
- 어장환경 보전 위한 어장관리 의무(어장청소) 이행력 확보 등 제도 강화

□ 주요내용

- 어장환경평가 주체 변경(제11조의2 제1항)

(기존)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 해양수산부장관

- 어장청소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신설(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제33조제1항 삭제)

(기존) 어장청소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변경) 어장청소 미이행 시 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²⁾ 부과(250만원 이하)

* 개정법률안 공포('22년 5월 예정)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어장관리법」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에 따라 어업면허(마을어업), 양식업면허를 받은 어장의 어장청소(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 등) 철저 - (청소주기)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 실시,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청소

1) 양식업면허의 심사·평가제도('25년 시행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내 심사·평가하는 제도(「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제1항)

2) 이행강제금 :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7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 어업인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수산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업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개 요

-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수산물 어획정보, 양식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수산보조사업 등의 참여자격 부여 및 어업 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됨

□ 관련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어업경영체 (어업인 및 어업법인)	등록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 : 수산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경영체 ■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 및 경영체 등록관리 시스템 등록
↓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증명 서류 검토 및 전산연계 자료 검증 ■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
↓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등록통지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별 고유등록 번호 부여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 통지서 발급
↓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상시조사(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검증을 통해 주민정보, 허가정보, 보조금지원 정보 등 매칭 ■ 현지조사를 통해 어업여부, 면적, 생산량, 생산금액 등 사실 확인

※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문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32-880-6493)

8

보조사업(예산) 신청절차 안내

● 관내 어촌과 어업인의 행정수요를 파악,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수산업·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

□ 개 요

- 조사시기 : 매년 2~3월(국비사업) / 7~8월(시비사업)
- 신청처 : 관할 군·구, 읍·면사무소
- 예산 편성절차



□ 어업인 당부(홍보)사항

- 군·구에서 사업 수요조사 시 적극 협조바라며, 사업 신청시기(군·구별로 세부일정 다름)에 맞춰 신청
-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란?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대상사업 : 시정 전반에 관한 市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인천시청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접수 등
- 추진절차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신청 : 2022. 2~4월(2023년 본예산 반영)
 - * 365일 연중 제안 가능, 상기간 외 제출된 의견은 추경 또는 2024년 본예산에 반영
-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032-440-2243)

4.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사업

< 세 부 목 차 >

1. 유용 수산종자 생산·방류 및 양식기술 연구 74
2.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 76

1 유용 수산종자 생산·방류 및 양식기술 연구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우량 수산종자 대량 생산·방류와 종 보존, 신품종 양식 기술 확보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추진개요

-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665백만원
- 사 업 량 : 어류·갑각류·패류 등 생산·방류 외 양식기술 연구

□ 사업내용

- 유용 수산종자 자체생산·방류 : 6품종/360만마리 이상
 - 참조기, 꽃게, 주꾸미, 갑오징어, 바지락, 참담치

(단위: 만마리)

구 분	방류크기	방류시기	계획량	방 류 해 역
합 계			360	
참 조 기	전장 5.0cm 이상	7월	30	용진군(30)
꽃 게	갑폭 1.0cm 이상	6~7월	190	중구(90), 강화군(100)
주 꾸 미	전장 0.5cm 이상	7월	50	중구(20), 강화군(10), 용진군(20)
갑오징어	전장 1.5cm 이상	7월	15	중구(5), 용진군(10)
바 지 락	각장 1.0cm 이상	11월	60	중구(60)
참 담 치	각고 0.5cm 이상	11월	15	용진군(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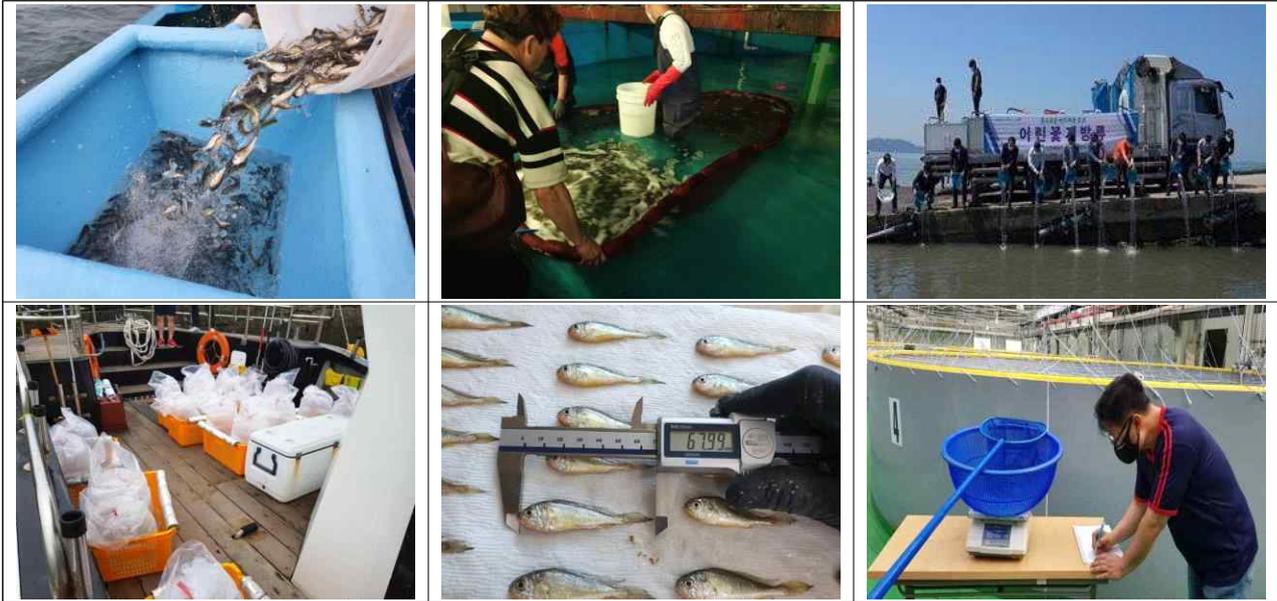
- 지역 특산품종 양식 기술 연구사업 : 6품종
 - 참 조 기 : 자치어 성장시기별 적정 먹이계열 규명 연구
 - 점 농 어 : 친어 사육관리 및 산란유도 연구
 - 전 복 : 백령도 전복관리 및 유전자 분석
 - 말 백 합 : 치패 대량생산 기술확보 연구
 - 낙 지 : 초기발생 과정 및 산란, 부화 최적 환경 연구
 - 갑오징어 : 수온별 난 발달 차이 연구

□ 추진계획

- 2023년 수산종자 방류희망 품종별 군·구 사전조사 : 2022. 7.
- 수산종자 방류 완료 및 연구사업 보고회 개최 : 2022.12.

□ 참고사진

- 방류현장(21)



- 연구수행 및 보고회(21)



2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

-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복원·보존 등의 연구를 통해 풍요롭고 건강한 인천 앞바다 조성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비 : 310백만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8개 사업)

□ 추진계획

- 수산자원 연구(4개 사업)
 - 친환경 양식어업 연구(순환여과 등 친환경 양식방법을 이용한 새우류 연구)
 - 해조류 산업화 연구(인천연안 자연산 해조류 모조 및 종자 확보)
 - 유용 수산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전복, 꽃게 등)
 - 국가지정 수산생물병성감정기관 운영(해양수산부 법정 업무)
- 해양생태연구(4개 사업)
 - 수산생물을 이용한 갯벌복원 연구(개불 등)
 - 인천 연안 해조류 생태 연구(중구 해조류 기초생태조사)
 - 해양생물 희귀·보호종 생태·환경 연구(달랑게)
 - 관내 양식장 적지 조사 및 연구(중구, 용진군, 강화군)

□ 기대효과

-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새로운 기술개발로 체계적인 해양생태계의 복원·보존

□ 참고사진

○ 수산생물을 이용한 갯벌복원 연구 등



【갯벌생태연구】

【해조류 연구】

【달랑게 생태연구】

○ 유용 수산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



【유용 수산생물(방류종자) 채집 및 유전자 조사】

○ 친환경양식어업연구



【친환경 양식시스템 및 새우류 연구】

○ 국가지정 수산생물병성감정기관 운영



【시료 분석 및 증명서 발급】

MEMO

□ 유관(수산)기관 연락처

기 관 별	처 리 과	처 리 팀	전화번호
시 청	수 산 과	수산정책팀	440 - 4851~6
		어업지도팀	440 - 4861~4
		수산자원팀	440 - 4871~4
		수산유통팀	440 - 4881~3
	수산자원연구소	운영지원팀	440 - 6401
		자원조성팀	440 - 6402
		자원연구팀	440 - 6420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물안전관리팀	458 - 7455
		수산기술보급팀	458 - 7463
	중 구	농수산과	해양수산팀
동 구	도시전략실	전략사업팀	770 - 6397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880 - 4383
연 수 구	경제지원과	경제정책팀	749 - 7796
남 동 구	농축수산과	수산자원팀	453 - 6081
서 구	경제정책과	산 업 팀	560 - 4453
강 화 군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930 - 3805
		어촌뉴딜팀	930 - 3841
		어업관리팀	930 - 3415
용 진 군	수산과	수산정책팀	899 - 2711
		지도선박팀	899 - 2721
		수산증식팀	899 - 2731
		자원조성팀	899 - 2741

2022년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 교육자료

2022년 5월 인쇄

2022년 5월 발간

발 행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편 집 : 수산기술보급팀

인천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

TEL (032)458-7464

FAX (032)440-8874
